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2. 1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윤형식)

제안사유

-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한 용어,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용어 등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목적 중 “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”를 “청소년 생활시설에서”로 변경(안 제1조 및 제3조)
- 장학생의 자격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“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”를 “장학금 신청(추천)일 현재 거주하는 자”로 변경(안 제3조)
- 장학생의 자격 중 일반장학생은 “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”로, 특별장학생은 “영세서민”에서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변경(안 제3조)

3. 질의답변 요지

○ 해당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7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사유

-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한 용어,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용어 등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목적 중 “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”를 “청소년 생활시설에서”로 변경(안 제1조 및 제3조)
- 장학생의 자격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“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”를 “장학금 신청(추천)일 현재 거주하는 자”로 변경(안 제3조)
- 장학생의 자격 중 일반장학생은 “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”로 특별장학생은 “영세서민”에서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변경(안 제3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불우청소년수용시설에 수용되어”를 “청소년 생활시설에서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”를 “장학금 신청(추천)일 현재 거주하는 자”로 하고, 동조제1호 중 “(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)”를 “(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)”로, “불우청소년 수요시설에 수용되어”를 “청소년 생활시설에서”로, 동조제2호 중 “영세서민”을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 및 <u>불우청소년수용시설에 수용되어</u>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u>청소년 생활시설에서</u>..... </p>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<u>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</u>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</p> <p>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u>장학금 신청(추천)일 현재 거주하는 자</u>..... </p>
<p>1.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주민(<u>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</u>)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교과목별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<u>불우청소년수용시설에 수용되어</u>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	<p>1.(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</u>)..... <u>청소년 생활시설에서</u>..... </p>

2. 특별장학생은 영세서민,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교과목별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2.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.....
.....
.....
.....